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환경부 자료 제공

환경부는 지난 달 4일 악취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인한 주민건강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톨루엔, 자일렌, 프로피온산 등 10종의 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2008년, 2010년부터 시행하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 편집자 주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변경”을 “취소 또는 변경”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표 1] 지정악취 물질

구 분		배출허용기준(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1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2	2005년 2월 10일부터
2	메틸머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0.004	
3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0.06	
4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0.05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0.03	
6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0.02	
7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0.1	
8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0.8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0.1	
10	뷰티르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0.1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0.02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0.006	
13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30	
14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2	
15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35	
16	메틸아이스뷰티르케톤	3 이하	1 이하	1~3	
17	뷰티르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4	2010년 1월 1일부터
18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0.07	
19	n-뷰티르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0.002	
20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0.002	
21	i-발레르산	0.004이하	0.001 이하	0.001~0.004	
2	2i-뷰티르알콜	4.0 이하	0.9 이하	0.9~4.0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변경(사용하는 원료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추가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표 2] 제2호 나목 중 (4), (5)

(4) 법 제19조제4호를 위반하여 측정대행업을 한 경우	법 제19조	경고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5) 법 제19조제5호를 위반하여 기술인력이 중복된 경우	법 제19조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7 제2호 나목 중(4), (5)를 [표 2]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중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신 설〉</p> <p>제6조(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①시·도지사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취관리지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1.~5. (생략) ②·③ (생략)</p> <p>제7조(약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약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p>	<p>제5조의2(약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p> <p>1.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p> <p>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한정한다)</p> <p>제6조(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p> <p>—————</p> <p>—————</p> <p>—————</p> <p>1.~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1. 약취민원인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약취가 별표3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기타지역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p> <p>2. 다음의 지역중 약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역내의 약취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기타지역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가.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p> <p>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p> <p>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 한한다.</p> <p>제8조(배출허용기준) ①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취의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는 별표 3과 같다.</p> <p>②·③ (생략)</p> <p>제10조(약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약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 <p>1. 약취배출시설 또는 약취방지시설을 동종·동일 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p> <p>2. 약취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p> <p>3. 사업장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p> <p><신 설></p> <p>②·③ (생략)</p> <p>제20조(수수료)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약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 5천원</p>	<p>제8조(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약취의 배출허용기준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약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는 별표 3과 같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약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p> <p>1. 약취배출시설의 약취방지계획서 또는 약취방지시설을 변경(사용하는 원료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p> <p>2. 약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추가하거나 폐쇄하는 경우</p> <p>3.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p> <p>4. 약취배출시설 또는 약취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0조(수수료) 법 제23조에 따른</p> <p>1. (현행과 같음)</p> <p><삭 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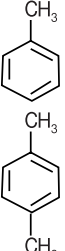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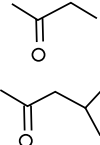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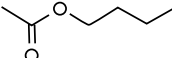
신규 지정약취물질 특성

1. 2008년도 적용 지정약취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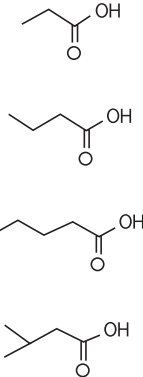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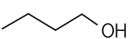
유기용제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물질이며, 이 중 toluene과 xylene은 석유화학제품의 기초가 되는 화학물질로 유기용제는 주로 페인트, 잉크, 점·접착제, 의약품, 시약, 세정제(IT 관련 제품에도 많이 사용) 용도로 사용된다.

2. 2010년도 신규 지정약취물질 5종

(2008년도 신규 지정 악취물질 주요 특성)

분류	분자구조	주요 특성
Aromatics Toluene (0.33 ppm) Xylene 0.38 ppm 0.041 ppm 0.058 ppm		- 정유공장의 BTX 추출공정에서 생산 - 연간 생산량 : 2,302 천톤 - 석유화학제품의 기본 원료 - 유기안료의 희석제(페인트, 잉크 등) - 정유공장의 BTX 추출공정에서 생산 - 연간 생산량 : 2,302 천톤 - 석유화학제품의 기본 원료 - 유기안료의 희석제(페인트, 잉크 등)
Ketones MEK 0.44 ppm MIBK 0.17 ppm		- 유기 용제로 사용 - HAPs 규제 대상에서 제외 사용량 증가 추세 - 연간 생산량 : 17천톤 규모 - 유기용제로 사용 - HAPs 규제 대상으로 사용량 정체
Esters butyl acetate 0.016 ppm		- 연간 생산량 : 25천톤 규모 - 유기용제로 사용

(2010년도 신규 지정 악취물질 주요 특성)

분류	분자구조	주요 특성
VFA propionic acid 0.0057 ppm n-butyric acid 0.00019 ppm n-valeric acid 0.000037 ppm i-valeric acid 0.000078 ppm		$\begin{array}{c} R \\ \\ NH_2 - C - COOH \\ \\ C \end{array}$ (아미노산 구조) - 아미노산의 분해과정에서 발생 아미노산 → VFAs, CO ₂ , H ₂ , NH ₃ Streptococcus, Peptotryptococcus Eubacterium, Lactobacillus Escherichia, Clostridium 등의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발생
Alcohols butyl alcohol (0.038 ppm)		

4개의 휘발성 지방산과 1개의 알콜류로 주로 유기성 물질의 부패과정에서 생성되며, 휘발성 지방산의 경우 아미노산의 분해과정에서 많이 발생한다. 축사, 축산 및 분뇨 처리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및 하수처리장 탈수등 등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능하며, 대부분 최소 감지값이 낮기 때문에 소량 배출 시에도 많은 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 [KO]